



농가가 주인되는 한돈협회, 소비자가 함께하는 한돈



대한한돈협회

수신 : 각 도협의회장 및 지부(회)장

제목 : 제54차 대의원 정기총회 추가 대의원 명단 제출 요청

1. 도협의회장 및 지부(회)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2.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54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3. 이에 도협의회 및 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대의원을 선출한 후 본회에 팩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정기총회 일정

- 1) 일시 : 2024년 2월 27일(화) *예정
 ※ 제1차 이사회(2/6) 개최 후, 총회 일시 및 장소 최종 확정하여 알림 예정.

나. 추가 대의원 명단 제출

- 1) 제출기한 : **2024년 2월 2일(금), 18:00 까지**
- 2) 제출처 : **대한한돈협회 경영지원팀 (팩스 : 02-581-9768)**

* 누락 방지를 위해 팩스 발송 후, 오주연 대리(070-4616-4250)에게 확인 연락 바람

3) 본회 대의원 자격

- 당연직 대의원
 - 본회 임원, 도협의회장, 지부장
 - 지회장은 해당지역의 300두 이상 사육농가수가 20호 이하이면서 지회 회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

○ 추가대의원

- 지부 회원 15명(준회원 포함)을 기준하여 15명(준회원 제외) 추가시마다 대의원 1명 추가

※ 각 지부에서 본회 총회 1개월 전에 대의원을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7일 이내에 추가 대의원의 취임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명단을 본회에 서면으로 보고

- 회원수 10명 미만인 지회의 경우 도협의회장이 도내 10명 미만의 타 지회와 연합하여 회원수 10명 이상이 될 경우 1명의 지회장을 대의원으로 선정(회원수가 많은 지회장, 동수의 경우 연장자)한 후 추가대의원 선출·명단 제출 마감일까지 본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되면 해당 지회장에게 대의원 자격 부여

5) 참고 사항

- 대의원 결격사유

대의원 선출규정 제5조(대의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당해년도 총회에 참석할 자격을 상실한다.

1. 전년도 본회 회비를 체납한 대의원
2. 본회 특별 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의원
3. 협회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 및 명예훼손을 발생시켜 이사회에서 자격을 제한한 자

다. 대의원 현황 : 213명

○ 임원 : 20명(지부장 겸직자 11명 제외)

○ 지부(회)장 : 193명(당연직 대의원 109명, 추가 대의원 84명)

구분	대의원			구분	대의원		
	계	당연직	추가		계	당연직	추가
경기도	37	14	23	전라북도	17	12	5
강원도	9	7	2	전라남도	19	14	5
제주도	12	4	8	경상북도	25	18	7
충청북도	10	9	1	경상남도	25	17	8
충청남도	39	14	25	합계	193	109	84

※ 대의원 현황은 임원의 지부장 겸직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'지부(회) 별 대의원 수 현황 (2023. 9 월말 기준)' 첨부 참조

첨 부 : 1) 추가 대의원 명단 제출 공문 양식(예시) 각 1부.

2) 취임승낙서 1부.

3) 지부(회)별 대의원 수 현황(2023. 9월말 기준) 1부.

※ 첨부자료 양식 : 협회 홈페이지/지부소개/지부알림사항. 끝.

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



담당자 : 오주연 대리 / 연락처 : 070-4616-4250 / 팩스 : 02-581-9768

시행 : 한돈협경-04564 (2024-01-12(금)) / 대표번호 : 02-581-9751

이메일 : kppa6@koreapork.or.kr / www.koreapork.or.kr

우 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3층